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 2023. 6. 22.] [법률 제19268호, 2023. 3. 21., 일부개정]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정책총괄과-부패방지정책) 044-200-7615

국민권익위원회 (심사기획과-부패행위신고) 044-200-7694

국민권익위원회 (심사기획과-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044-200-7690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정책과-신고자 보호·보상) 044-200-7753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조사기획과-고충민원 조사·처리) 044-200-7308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조사기획과-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044-200-731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권익위원회를 설치하여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며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공공기관의 책무) ① 공공기관은 건전한 사회윤리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패방지에 노력할 책무를 진다.

② 공공기관은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이를 개선 또는 시정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교육·홍보 등 적절한 방법으로 소속 직원과 국민의 부패척결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부패방지를 위한 국제적 교류와 협력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공직자의 청렴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집무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장 부패행위 등의 신고 및 신고자 등 보호

제55조(부패행위의 신고)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제56조(공직자의 부패행위 신고의무) 공직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사기관·감사원 또는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57조(신고자의 성실의무)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이하 이 장에서 "신고"라 한다)를 한 자(이하 이 장에서 "신고자"라 한다)가 신고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개정 2019. 4. 16.>

제58조(신고의 방법)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본인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써 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6.>

제58조의2(비실명 대리신고) ① 제58조에도 불구하고 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신고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8조에 따른 신고자의 인적사항 및 기명의 문서는 변호사의 인적사항 및 변호사 이름의 문서로 갈음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위원회에 하여야 하며, 신고자 또는 신고자를 대리하는 변호사는 그 취지를 밝히고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위임장을 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봉인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신고자 본인의 동의 없이 이를 열람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2. 1. 4.]

제62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신고자에게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자료 제출 등(이하 “신고등”이라 한다)을 한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자에게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9. 4. 16.]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2024. 1. 1.] [법률 제19208호, 2022. 12. 31., 타법개정]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정책과) 044-200-775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7. 24., 2017. 10. 31., 2023. 3. 21.>

1.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가.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 나.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2. “**공익신고**”란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 · 진정 · 제보 · 고소 · 고발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익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 가. 공익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를 한 경우
 - 나.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공익신고를 한 경우
3. “**공익신고등**”이란 공익신고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 · 수사 · 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 · 소송 등에서 진술 · 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공익신고자**”란 공익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5. “**공익신고자등**”이란 공익신고자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 · 수사 · 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 · 소송 등에서 진술 · 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을 말한다.
6. “**불이익조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 가.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 나.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 다.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 라.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 마.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 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 바.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 · 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 사.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監查)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 아.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 자.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解止),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7. “**내부 공익신고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신고자를 말한다.
 - 가. 피신고자인 공공기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기업, 법인, 단체 등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자
 - 나.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과 공사 · 용역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2장 공익신고

제6조(공익신고)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

1.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2.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
3. 수사기관
4. **위원회**
5. 그 밖에 공익신고를 하는 것이 공익침해행위의 발생이나 그로 인한 피해의 확대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7조(공직자의 공익신고 의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이하 "공직자"라 한다)는 그 직무를 하면서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조사기관, 수사기관 또는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공익신고의 방법) ① 공익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신고서"라 한다)와 함께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3. 공익침해행위 내용
4.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口述)로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구술신고를 받은 자는 신고서에 공익신고자가 말한 사항을 적은 후 공익신고자에게 읽어 들려주고 공익신고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의2(비실명 대리신고) ①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로 하여금 공익신고를 대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은 변호사의 인적사항으로 간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익신고는 위원회에 하여야** 하며, 공익신고자 또는 공익신고를 대리하는 변호사는 그 취지를 밝히고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공익신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위임장을 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봉인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공익신고자 본인의 동의 없이 이를 열람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8. 4. 17.]

제9조의2(보호·지원 안내)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안내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제12조에 따른 비밀보장에 관한 사항
2. 제13조에 따른 신변보호조치 요구에 관한 사항
3. 제16조에 따른 인사조치 요구에 관한 사항
4. 제17조에 따른 보호조치 신청에 관한 사항
5. 제22조에 따른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에 관한 사항

6. 제26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 신청에 관한 사항
 7. 제26조의2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8. 제27조에 따른 구조금 지급 신청에 관한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안내 대상,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7. 4. 18.]

제10조(조사기관등의 공익신고 처리) ① 조사기관등이 제6조에 따라 공익신고를 받거나 제9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공익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때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수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20.>

- ② 조사기관등은 공익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 또는 수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고 끝낼 수 있다. <개정 2021. 4. 20.>

1. 공익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3. 공익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보완 기간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4. 공익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5. 공익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6.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7. 그 밖에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③ 조사기관등은 제2항에 따라 조사 또는 수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하거나 조사 또는 수사를 중단하고 끝낸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20.>
- ④ 조사기관등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를 끝냈을 때에는 조사 또는 수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20.>
- ⑤ 제6조에 따라 공익신고를 접수한 기관의 종사자 등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 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4. 20.>
- ⑥ 조사기관등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공익신고를 접수하였거나 이송, 이첩 또는 송부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조사기관등에 이송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20.>

[제목개정 2021. 4. 20.]

■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 <개정 2023. 7. 25.>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제2조제1호 관련)

- 1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 2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3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4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5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 6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7 . 「가축전염병 예방법」
- 8 .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9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10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11 . 「개인정보 보호법」
- 12 .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 13 . 「건강검진기본법」
- 14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15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 16 . 「건설기계관리법」
- 17 . 「건설기술 진흥법」
- 18 . 「건설산업기본법」
- 19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20 . 「건축물관리법」
- 21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 22 . 「건축법」
- 23 . 「건축사법」
- 24 . 「검역법」
- 25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6 . 「결핵예방법」
- 27 . 「경륜·경정법」
- 28 . 「경비업법」
- 29 . 「경찰관 직무집행법」
- 30 . 「계량에 관한 법률」
- 31 .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 32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33 . 「고용보험법」
- 34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35 . 「골재채취법」
- 36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37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38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 39 . 「공공주택 특별법」
- 40 . 「공동주택관리법」
- 41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42 . 「공연법」
- 43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 44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45 . 「공인중개사법」
 - 46 .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화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 47 . 「공중위생관리법」
- 48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 49 . 「공항시설법」
- 50 . 「관광진흥법」
- 51 . 「광산안전법」
- 52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 53 . 「교통안전법」
- 54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55 . 「국가기술자격법」
- 56 . 「국가보안법」
- 57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 58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 59 . 「국민건강보험법」
- 60 . 「국민건강증진법」
- 61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62 . 「국민연금법」
- 63 . 「국민영양관리법」
- 64 . 「국민체육진흥법」
- 65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66 . 「국유재산법」

67.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68.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69.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70.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7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2.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73.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74. 「군사기밀 보호법」
7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76. 「군형법」
77. 「궤도운송법」
78. 「귀속재산처리법」
79. 「근로복지기본법」
80.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8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82.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8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8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85. 「금융지주회사법」
86.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87.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88. 「기계설비법」
89. 「기초연금법」
90.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91. 「낚시 관리 및 육성법」
9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93. 「내수면어업법」
94.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95. 「노인복지법」
9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97. 「노후준비 지원법」
9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99.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100.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101. 「농약관리법」
102. 「농어촌도로 정비법」

103. 「농어촌정비법」
104. 「농업기계화 촉진법」
105.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06. 「농지법」
107.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08. 「담배사업법」
109.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110.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11.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112. 「대기환경보전법」
113.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1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115. 「대외무역법」
116.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117.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118.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119. 「도로교통법」
120. 「도로법」
121. 「도선법」
12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23. 「도시가스사업법」
12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12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126.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127. 「도시철도법」
128.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12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13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31. 「동물보호법」
132.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3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134. 「말산업 육성법」
135. 「먹는물관리법」
136. 「모자보건법」
137.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138.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39.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140. 「문화재보호법」
141.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14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43. 「물류정책기본법」
144.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45. 「물환경보전법」
146.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147.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14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149. 「민방위기본법」
150.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5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152.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153.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154. 「방송법」
155. 「방위사업법」
156.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157.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158.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159. 「병역법」
160.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161.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162.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163. 「보안관찰법」
164.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165.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166.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167. 「보험업법」
168.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16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170. 「복권 및 복권기금법」
17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17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173. 「부정수표 단속법」
17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175.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176. 「비료관리법」
177.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178.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179.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80.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81. 「사료관리법」
182. 「사방사업법」
183.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18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185.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186. 「사회복지사업법」
187.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188.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189. 「산림보호법」
19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9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9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193. 「산업디자인진흥법」
194. 「산업안전보건법」
19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6. 「산업표준화법」
197. 「산지관리법」
198. 「상표법」
199. 「상호저축은행법」
200. 「새마을금고법」
201.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202.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3.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204.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5.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206. 「석면안전관리법」
20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208. 「석탄산업법」
209.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10. 「선박안전법」

- 211.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 212. 「선박직원법」
- 213.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 214. 「선원법」
- 215.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216.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217.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21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219. 「소금산업 진흥법」
- 220.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 221. 「소방기본법」
- 222. 「소방시설공사업법」
- 223. 「소방장비관리법」
- 224. 「소비자기본법」
- 225. 「소음·진동관리법」
- 226.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 227. 「소하천정비법」
- 228. 「송유관 안전관리법」
- 229. 「수도법」
- 230.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231.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232.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 233. 「수산업법」
- 234. 「수산자원관리법」
- 235. 「수산종자산업육성법」
- 236. 「수상레저안전법」
- 237.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 238.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239.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240.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 241. 「습지보전법」
- 242. 「승강기 안전관리법」
- 24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244. 「식물방역법」
- 245. 「식물신품종 보호법」
- 246.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 247. 「식품 등의 표시 · 광고에 관한 법률」
- 248. 「식품산업진흥법」
- 249. 「식품안전기본법」
- 250. 「식품위생법」
- 25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 25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253. 「신용협동조합법」
- 254. 「실내공기질 관리법」
- 255.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256. 「아동복지법」
- 257. 「아동수당법」
- 258.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259. 「아이돌봄 지원법」
- 260. 「악취방지법」
- 26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26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263. 「약사법」
- 264. 「양곡관리법」
- 265.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 266.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 267.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 268. 「어선법」
- 269. 「어장관리법」
- 270. 「어촌 · 어항법」
- 271. 「에너지법」
- 27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27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274. 「여신전문금융업법」
- 275.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 276. 「연안관리법」
- 277.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 278. 「영산강 · 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279. 「영유아보육법」
- 280. 「영해 및 접속수역법」
- 28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82. 「예금자보호법」

- 283. 「예비군법」
- 284.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 285.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286.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 287. 「외국환거래법」
- 288. 「외식산업 진흥법」
- 289. 「우편법」
- 290.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 291. 「원자력안전법」
- 292.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 293. 「위생용품 관리법」
- 294.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295. 「위험물안전관리법」
- 296. 「유사수진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 297. 「유선 및 도선 사업법」
- 298. 「유아교육법」
- 299.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 300. 「유통산업발전법」
- 301. 「은행법」
- 30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0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304. 「의료급여법」
- 305. 「의료기기법」
- 306.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307. 「의료법」
- 308.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 309.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310.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 311.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312. 「인삼산업법」
- 313.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314.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 315.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 316. 「임금채권보장법」
- 317.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 318. 「입양특례법」

- 319. 「자격기본법」
- 320. 「자동차관리법」
- 32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322. 「자연공원법」
- 323. 「자연재해대책법」
- 324. 「자연환경보전법」
- 325.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 326.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327.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328.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 329.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 330. 「장애인 복지지원법」
- 331.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 33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333.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 334.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335.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33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337.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 338. 「장애인복지법」
- 339. 「장애인연금법」
- 340.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341.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34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343.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 344.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 345. 「재해구호법」
- 346.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 347.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 348. 「저작권법」
- 349.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 350.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 351. 「전기공사업법」
- 352. 「전기사업법」
- 353.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35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 355. 「전기통신기본법」
- 356. 「전기통신사업법」
- 357. 「전력기술관리법」
- 358. 「전자금융거래법」
- 359.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 360.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361. 「전자서명법」
- 362.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 363.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64. 「전파법」
- 365. 「정보통신공사업법」
- 366.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 36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368.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369.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 37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371. 「제품안전기본법」
- 372. 「종자산업법」
- 373. 「주거급여법」
- 374. 「주민투표법」
- 375.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376. 「주차장법」
- 377. 「주택법」
- 378. 「중소기업은행법」
- 379.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380.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38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 382. 「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 383.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 384. 「지방세기본법」
- 385. 「지방재정법」
- 386.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 387. 「지역보건법」
- 388.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 389. 「지진·화산재해대책법」
- 390. 「지하수법」

- 39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392. 「직업안정법」
- 393.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394. 「집단에너지사업법」
- 395.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 396.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397. 「철도사업법」
- 398. 「철도안전법」
- 399.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 400. 「청소년 기본법」
- 401. 「청소년 보호법」
- 402. 「청소년복지 지원법」
- 403. 「청소년활동 진흥법」
- 404. 「청원경찰법」
- 405. 「체외진단의료기기법」
- 406.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 40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408. 「초지법」
- 409. 「총포 · 도검 ·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10. 「축산물 위생관리법」
- 411. 「축산법」
- 412. 「출입국관리법」
- 413.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 414.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 415.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 지원에 관한 법률」
- 416.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 417. 「토양환경보전법」
- 418. 「통신비밀보호법」
- 419.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 420.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421.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 422. 「폐기물관리법」
- 423.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 424. 「표시 ·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425.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 42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427. 「하수도법」
428. 「하천법」
429. 「학교급식법」
430. 「학교보건법」
43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43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43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434. 「한국마사회법」
435. 「한부모가족지원법」
436.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437.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438. 「항공보안법」
439. 「항공사업법」
440. 「항공안전법」
441. 「항로표지법」
442. 「항만법」
443. 「항만운송사업법」
444.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445. 「해상교통안전법」
446. 「해양경비법」
447.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448.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49.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450.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51. 「해양환경관리법」
452. 「해운법」
453. 「혈액관리법」
454.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45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456.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457. 「화장품법」
458.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59.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 460. 「화학물질관리법」
- 461.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 462. 「환경보건법」
- 463.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 464. 「환경영향평가법」
- 465.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 466. 「환자안전법」
- 467.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 468. 「초·중등교육법」
- 469. 「고등교육법」
- 470. 「사립학교법」
- 471. 「근로기준법」
- 472. 「해사안전기본법」



근로기준법

[시행 2021. 11. 19.] [법률 제18176호, 2021. 5. 18.,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 해고, 취업규칙, 기타) 044-202-7534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 - 휴게, 특례업종) 044-202-7972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 소년) 044-202-7535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 임금) 044-202-7548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여성) 044-202-7475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 - 제63조 적용제외, 관공서 공휴일) 044-202-7545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 - 근로시간, 연차휴가) 044-202-7973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 - 유연근로시간제) 044-202-7549

제6장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신설 2019. 1. 15.>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9. 1. 15.]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1. 4. 13.>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21. 4. 13.>

[본조신설 2019. 1. 15.]

제116조(과태료) ① **사용자**(사용자의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를 포함한다)가 제76조의2를 위반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1. 4. 1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09. 5. 21., 2010. 6. 4., 2014. 3. 24., 2017. 11. 28., 2021. 1. 5., 2021. 4. 13., 2021. 5. 18.>

1. 제13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 노동위원회 또는 근로감독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2. 제14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48조, 제66조, 제74조제7항 · 제9항, 제76조의3제2항 · 제4항 · 제5항 · 제7항, 제91조, 제93조, 제98조제2항 및 제99조를 위반한 자
 3. 제51조의2제5항에 따른 임금보전방안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4. 제102조에 따른 근로감독관 또는 그 위촉을 받은 의사의 현장조사나 검진을 거절, 방해 또는 기피하고 그 심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진술을 하며 장부 ·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장부 · 서류를 제출한 자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 · 징수한다. [<개정 2010. 6. 4., 2021. 4. 13.>](#)
- ④ 삭제<2009. 5. 21.>
- ⑤ 삭제<2009. 5. 21.>